

## 9. 가톨릭국제교육원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 본원은 가톨릭국제교육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함)이라 하고, 가톨릭꽃동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내에 둔다. (2011.7.1. 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제2조(목적) 본원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, 가톨릭 사회복지 이념과 꽃동네 정신에 입각한 국제적 교육기능의 확충·심화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 개정)

제3조(사업) 본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외 가톨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
2. 국내외 가톨릭사회복지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
3. 외국 유학생 관리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운영
4. 국제교육 관련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
5.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
### 제 2 장 기구 및 직제

제4조(기구) 본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5조(직제) 본원에는 원장 및 지도교수의 직제를 둔다.

제6조(원장)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, 본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, 유고시에는 실처장 중에서 지명한다.

제7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본원의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한다.

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또는 외국인 특별연구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직원) 본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조교) 본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연구원 및 특별연구원) ①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은 원장이 지정한 연구 과제를 연구한다.

③ 연구원은 본교의 전임교수 중에서, 특별연구원은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지명 위촉한다. 다만, 특별연구원의 위촉기간은 과제수행의 기간으로 한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목적)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는 본원이 추진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 개정)

제12조(기능)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내외 가톨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
2. 국내외 가톨릭사회복지 단체와의 학문적 교류
3. 외국 유학생 관리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운영

4. 국제교육 관련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
5. 기타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6. 본원의 실적에 관한 평가
7.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3조(구성) ① 이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, 지도교수의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국제화 교육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유학생 대표 등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4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특별과정 운영

제15조(설치) 본원에 다음 각 호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가톨릭 신앙에 입각한 외국의 사회복지 특별과정
2. 본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외국 유학생 대상의 특별과정

제16조(교육과정) ① 전조의 특별과정의 설치는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정신에 준거하고,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.

- ② 교육과정은 장·단기 또한 방학 중의 계절학기의 전례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7조(학점) 본원의 특별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점은 정관과 학칙 및 제 규정의 정신과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조정된다.

## 제 5 장 재정 및 보고

제18조(재정) 본원의 재정은 본교의 회계로 충당하며, 모든 수입 지출의 회계는 교비회계의 방식에 따른다.

제19조(회계년도) 본원의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사업계획 및 보고)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전년도의 재정회계결산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- ② 원장은 매 분기(5월, 8월, 11월)마다 사업 및 예산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21조(기타 재원) 학술용역 수입 및 기부금 등은 그 소요 비용을 제한 잔액을 적립하여, 앞으로의 독립회계에 대비한다.

제22조(재산귀속) 본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.

#### 제 6 장 기타

제23조(업적) 본원의 연구 업적의 평가는 대한민국 정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의 기준에 따른다.

제24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,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2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26조(운영세칙) 기타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